

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 심사보고서

1995. 4. 29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달서구청장

나. 제출일자 : 95. 4. 24

다. 회부일자 : 95. 4. 24

라. 상정일자 : 95. 4. 28

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서상우)

가. 제안사유

- 성서지구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 및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등 저소득주민 복지 수요 변동에 따른 정원조정

나. 주요골자

- 구분청 정원이 421명에서 427명으로 6명 증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백창기)

본 조례 개정은 성서지구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95년도 7월부터 시범 설치 예정인 보건복지 사무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 증원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4. 토론요지 : 없음

5. 수정안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반대 : 없음

7. 첨부 :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 사본 1부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95-1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4.

제출자 : 달서구청장
(기획감사실)

1. 제안이유

- 성서지구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 및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등으로 정원 조정

2. 근거

- 기획 12200-292('95. 4. 12)
: 사회복지 전문요원 구청간 정원 조정

3. 주요골자

- 구분청 정원을 421명에서 427명으로 6명 증원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제1항제1호중 "421"을 "427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<생 략> 1. 구분청 : <u>421명</u> 2~3. <생 략>	제2조(정원의 총수) <현행과 같음> 1. : <u>427명</u> 2~3. <현행과 같음>